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0246	박덕흠의원 등 10인	’25.4.30.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2.16.)
	2210270	임오경의원 등 12인	’25.4.30.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2.16.)
	2210475	김재원의원 등 14인	’25.5.12.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2.1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9.)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

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법률 제 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로, “장애인이 장애인이”를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의3(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